

### 영화 『담보』를 통해 알아보는 담보계약과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의 최고한도



#### 영화 『담보』의 줄거리

영화 『담보』는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강명자)의 딸(승이)이 『담보』로 잡혀 채권자들(박두석, 종배)과 함께 지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승이에게 되려 인생을 담보 잡힌 두석과 종배, 그리고 빚 때문에 아저씨들에게 맡겨진 담보 승이.

세 사람은 어느덧 서로에게 정이 들고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 영화 『담보』의 사실관계

명자에게 돈을 재촉하는 두석

영화는 사채업자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딸인 9세 승이를 담보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작품 속에서, 사채업자 두석은 채무자 명자에게 원금 100만원에 대한 연체한 3개월분 이자 75만원을 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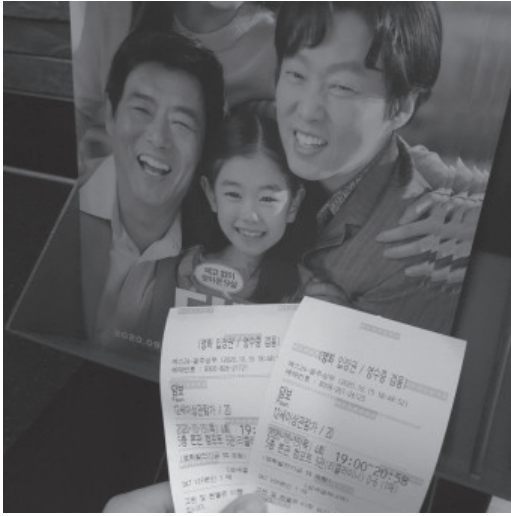
원금 100만원에 대한 월 이자가 25만원이면 월 25%, 연 300%의 이율입니다.

#### 영화 『담보』 속 궁금증

##### Q1. 사람이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영화에서는 불법적인 아동 납치를 담보라고 표현하지만 당연하게도 법에서 사람 자체가 담보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채권 관계에서 채권거래의



보호를 위해 민법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 동산채권담보법)에서 ‘채권 담보계약’의 종류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채권담보계약에는 인적담보계약과 물적담보계약이 있습니다.

### 인적담보계약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으로 보증계약 또는 연대약정이 있다(민법 제428조 및 제413조).

### 물적담보계약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동산 등에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다.

## Q2. 연 이자율 300%, 계약서대로 해야 할까?

민법이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고 해도, 이자의 적절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이자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제정된 법률이 바로 ‘이자제한법’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21년 7월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입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채권자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받아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